

---

# 금융위원회 ombudsman 2018년 활동결과 보고

---

2019. 1월

금 용 위 원 회  
금융소비자정책과

# 목 차

I. 추진 경과 .....	1
II. 금융위 ombudsman 활동 결과 .....	2
1. '18년 ombudsman 운영 현황 .....	2
2. 주요 추진성과 .....	3
3. 주요 불수용·중장기 검토 과제 .....	9
III. 향후 계획 .....	11
[참고 1] 금융위 ombudsman 개요 .....	12
[참고 2] 제2기 금융위 ombudsman 명단 .....	13

## I. 추진 경과

- '16. 2월 금융당국의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 및 소비자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ombudsman 제도를 도입
  - \* 근거 : 금융규제 운영규정('15.12월 제정), 금융위원회 ombudsman 운영규칙('16.3월 제정)
-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며,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해촉 불가
-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·정비하고 현장 중심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역할

### < ombudsman 역할 >

- ① 금융행정지도·감독행정의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개선권고·건의 및 의사표명
- ② 지도공문, 구두지시, 협회 자율규제 등 그림자규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효력·준수·조치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
- ③ 민원 등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민원제도 및 금융 소비자보호제도에 피드백(의견수렴 채널로서의 ombudsman)

- '18. 3월 제2기 ombudsman 5인을 위촉하여 활동중('18.3월~'20.2월)
  - \* [2기 ombudsman 명단] : 장용성(위원장)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,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, 서정호 금융연 선임연구위원,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,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
- 그간 ombudsman이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,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청취에는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에 따라,
- '18년 부터는 ombudsman을 금융소비자의 금융혁신을 위한 자문기구 역할을 부여하여 '금융소비자' 측면의 활동을 강화

⇒ '18년 중 ombudsman 활동의 주요성과를 결산하여 보고드릴

## Ⅱ. 금융위 옴부즈만 활동 결과

### 1 '18년 옴부즈만 운영 개관

□ 제2기 옴부즈만이 출범한 이후 '18년 매분기 각 1회씩 총 4회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하여 총 48건의 개선과제를 심의

\* 제1기 옴부즈만('16.2월~'18.2월)은 총 93건(연간 46.5건)의 개선과제를 검토하여 58건(연간 29건)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

○ 총 48건의 개선과제중 29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개선방안을 마련, 19건은 추가검토 필요 또는 불수용

#### < '18년 옴부즈만 운영 현황 >

차 수	의 결	의 결		
		수용(일부수용)	추가검토	불수용
1차('18.4.26.)	11	9	0	2
2차('18.6.28.)	10	5	1	4
3차('18.9.19.)	16	8	1	7
4차('18.12.4.)	11	7	1	3
<b>계</b>	<b>48</b>	<b>29</b>	<b>3</b>	<b>16</b>

○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개선과제 40건을 심의하여 24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(추가검토 필요 2건, 불수용 14건)

○ 금융회사 고충민원·규제개선 과제 8건을 심의하여 5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(추가검토 필요 1건, 불수용2건)

#### < '18년 옴부즈만 분야별 과제 현황 >

차 수	의 결	의 결		
		수용(일부수용)	추가검토	불수용
금융소비자보호	40	24	2	14
금융회사 고충민원·규제개선	8	5	1	2
<b>계</b>	<b>48</b>	<b>29</b>	<b>3</b>	<b>16</b>

## 2 주요 추진 성과

### 1. 금융소비자를 위한 제도개선 : 주요 수용과제

◇ 총 40건의 과제를 심의하여, 여전 분야 7건, 보험 분야 7건, 금투 분야 4건, 기타 6건 등 24건을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함

#### 1. 여전 분야

##### 1] 카드 자동결제시 「카드결제 알림문자 서비스」 제공

- (현황) 신용카드로 통신요금 등을 자동결제시 일부 카드사가 일부 결제내용에 대해서 “카드결제 알림문자(SMS)”를 제공
- ⇒ (개선) 소비자의 카드결제 편의 제고 차원에서 모든 카드사가 카드 자동결제시 알림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

※ (이행현황) 여신협회는 전 카드사가 공통적으로 자동결제 내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'18.12월 「휴대폰 메시지 표준약관」을 제정 완료

##### 2] 카드발급시 행정전산망을 활용한 소득확인 증빙절차 개선

- (현황) 카드발급 신청시 소비자(발급신청자)가 소득증빙서류\*를 카드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
  - \*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보험료납부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등의 소득증빙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발급 가능
- ⇒ (개선) 신용카드사가 전산망(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)을 통해 직접 소비자의 소득 정보 조회\* 후 발급 심사가 이뤄지도록 개선
  - \* 신청서 작성시 소득증빙 관련 정보 활용에 동의한 소비자限

※ (이행현황) 카드사가 동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의 소득정보 등을 조회 가능하도록 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」을 개정 완료('18.8월)

- 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 등과 행정정보 공유 협의 예정

### 3 카드발급 관련 전세대출 이용자 불편해소

- (현황) 전세대출이 있는 카드발급 신청인이 전세계약서나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하면, 가처분소득 계산 시 전세대출분을 고려하지 아니하나,
  - 관련서류를 미제출하면, 가처분소득 계산시 소득에서 전세대출 원금을 차감하여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

※ 가처분소득 = 연소득 -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

\* 은행의 전세대출은 원금 만기 일시상환 상품으로, 대출이자만 채무 상환액으로 계상하여 가처분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

- ⇒ (개선) 소비자의 '동의'를 받아 카드사가 직접 신청인의 전세자금 대출 관련정보를 확인하여, 신청인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

※ (이행계획) 「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」을 개정할 계획('19.1분기)

## 2. 보험 분야

### 1 보험상품의 사업비, 수익정보 수시고지

- (현황) 저축성보험·변액보험은 가입기간 중 수익률 등이 변동될 수 있으나, 이를 수시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
  - \* 저축성보험은 매년, 변액보험은 분기 1회 수익률 등을 서면으로 안내
- ⇒ (개선) 보험상품의 수익률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(변액보험: 분기 1회 → 월 1회)하고, 서면 이외에 문자메시지(LMS) 등으로도 제공

※ (이행현황) '18.8월 변액보험 수익률 정보 제공 개선방안' 마련·발표, 저축성보험의 경우 변액보험 시행 후 확대적용 추진 예정

\* 문자메시지 제공(매월) 및 모바일 통한 세부정보 확인 시스템 마련('19.1분기 시행)

## 2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 중복가입 확인·안내

- (현황) 운전자 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은 복수 가입에 따른 중복보장이 불가하나, 가입시점에 따른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이 없어 소비자의 보험료 이중부담 발생 가능

\* 손해보험 중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만 보험사에 중복가입 체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, 중복계약 확인 및 안내 의무가 부여

- ⇒ (개선) 기타 손해보험\*도 보험회사가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을 마련하고, 중복여부 확인 후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개선

\* 운전자 보험, 벌금을 보상하는 보험, 가전제품수리비용 보상 보험 등

※ (이행현황) 보험회사의 기타손해보험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 마련 및 보험회사에 중복계약 체결 확인·안내 의무 부여(보험업법 시행령) 시행('18.12월)

## 3 보험금 지급 내역서 표준안 마련 및 제공 방식 다양화

- (현황) 보험금 지급 내역서 제공 시, 보험사마다 ①내용이 달라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가 있고, ②전달방식도 상이

- ⇒ (개선) 보험상품 특성에 따라 ①보험금 지급내역을 상세히 안내하는 표준문안을 마련하고, ②소비자 편의를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(문자메시지·SNS 등)으로 세부 내역서를 제공

※ (이행계획) 보험금 내역 안내 표준화안 검토중(손해보험협회)

## 4 교통사고 처리내역서 제출 요구관행 개선

- (현황) 자동차보험 처리(보상)후 개인이 가입한 장기보험금(상해 보험금)을 청구하려면, 보험사가 발급하는 교통사고 처리(보상)내역서를 장기보험 가입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 존재

- ⇒ (개선) 소비자의 '동의'를 받아 보험회사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소비자의 자동차 사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

※ (이행계획) 신용정보원이 자동차보험사와 협의중 → '19년 중 개선 계획

### 3. 금융투자 분야

#### 1)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 신규가입 허용

- (현황) 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또는 투자위험이 변경되는 계약체결시 자필로 기재토록 하여 비대면으로 상품이용에 제한
- ⇒ (개선) 투자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

※ (이행계획)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 및 발표 예정('19.1분기중)

#### 2) 자산운용보고서 교부방법 확대

- (현황) 자산운용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직접 혹은 전자우편으로만 교부하여, 소비자들이 모바일 등을 활용한 이용에 제약
- ⇒ (개선) 투자자 편의 확대를 위해 문자메시지,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개선

※ (이행현황)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완료('19.1.8일)

#### 3) 투자일임계약 투자자에 대한 투자성향 파악 주기 완화

- (현황)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 성향분석을 실시하여 투자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,
  - 투자성향은 단기간에 변하지 않음에도 투자일임업자가 매분기 투자성향을 확인하여 투자자에게 불편 발생
- ⇒ (개선) 투자자 불편 감소를 위해 투자자 회신이 필요한 투자성향 확인은 연 1회로 줄이고, 분기별로는 계좌이용 변경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(투자자는 필요시 회신)하는 방안 추진

※ (이행계획)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및 발표 예정('19년 중)

## 4. 기타 분야

### 1 통신회사 채무를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

- (현황) 미납·연체된 통신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통신사간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미포함
- ⇒ (개선) 통신채무는 사회취약계층의 대표적인 생계형 채무로서 연체이자·추심·압류 부담이 결합되어 큰 고통이 유발되므로, 취약계층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위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추진

※ (이행계획) 신복위-정보통신진흥협회간 협의를 거쳐 통신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포함여부 및 세부방안 확정 예정

### 2 거래중지계좌 전환전 알림 서비스 제공

- (현황) 거래중지계좌\*로 지정되면 입출금, 잔액조회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기고, 계좌 복원시 까다로운 절차 진행 필요
- \* 예금잔액이 10,000원 미만이고,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등
- ⇒ (개선) 장기미사용으로 인한 거래중지전 문자 등으로 사전안내 실시

※ (이행계획) 은행은 '19.2월 중, 저축은행 등은 '19.1분기 중 시행

### 3 금융상품 약관·상품설명서를 개선하여 민원발생 최소화

- (현황) 금융상품 약관·상품설명서가 복잡하고 분량이 방대하며 불친절하여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
- ⇒ (개선)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약관·상품설명서를 “명확하게, 읽기 쉽게, 분량은 적게” 개선 추진

※ (이행현황) 약관 개선 등 금융소비자보호 T/F를 운영하여 방안 검토중

## 2. 금융회사 고충민원 및 규제개선 : 주요 수용과제

◇ 총 8건의 과제를 심의하여, 금융권 오픈 API확대, 대부업권 신용정보 공유 등 5건을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함

### 1]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창출을 위한 금융권 오픈 API 확대

- (현황) 현재 은행업권(금융결제원 오픈플랫폼), 증권업권(코스콤 오픈 플랫폼)에서 제한된 오픈 API(Application Program Interface)만 제공하고 있어 금융데이터 활용이 매우 제한적
- ⇒ (개선) 핀테크혁신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공동 또는 개별 오픈 API 활성화를 추진

※ (이행현황) 공동 오픈API 참여 금융회사 및 제공 API 종류를 지속 확대 중, 개별 오픈API 이용 활성화 위해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('18년말)

### 2]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실 공유절차 개선

- (현황) 고객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신용정보원을 통해 보험사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실 확인이 불가능
- ⇒ (개선) 신용정보원을 통해 보험회사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대해서 확인 가능토록 개선

※ (이행현황) 신용정보원이 개선을 추진 중이며 '19년중 개선할 계획

### 3] 여전업-대부업권 간 신용정보 공유

- (현황) 대부업권의 신용정보가 여전업권에 공유되지 않아 여전사는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 등에 애로
- ⇒ (개선) 정확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하도록 기존에 제한적으로 공유하던 대부업권 신용정보를 쏠 금융권에 공유

※ (이행현황)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('18.11월)하였고, '19.3월중 대부업 신용정보가 공유될 예정

### 3 주요 불수용·중장기 검토 과제

#### 1. 금융소비자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

##### □ 금융투자회사 고객 투자성향 분석모델 개발 및 공유·활용

- (권고사항)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①통일된 투자성향 분석모델을 개발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결과를 ②신용정보원에 집적한 후 실시간으로 분석결과를 공유·활용

⇒ (검토결과) 투자성향정보의 법적성격 등 해결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중·장기적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

\* 투자성향정보가 신용정보인지, 신정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

##### □ 고령자 카드발급 이용 편의성 제고

- (권고사항) 고령인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①전용창구 설치, ②신용카드 명세서 글자 크게 인쇄, ③지하철 무임승차 기능을 신용(체크)카드에 탑재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

⇒ (검토결과) 고령자에 대한 실효성, 카드사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

- 특히 무임승차카드 발급 기관 및 이와 관련된 기관 등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중장기 검토 추진

##### □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한도 확대

- (권고사항)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의 금액을 상향 조정\* 하여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활용도를 높이고 소비자 편의성 증진

\* 기명 200만원 → 3,000만원, 무기명 50만원 → 200만원

⇒ (검토결과)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발행한도 조정은 이용자 보호 측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, 현재 「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」를 통해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 중

## □ 법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시 이용 가능대상 확대

- (권고사항) 법인인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('17.7월) 되었으며 현재 법인 대표자에 한하여 이용가능하나, 가능대상 확대(법인대표자의 대리인 등) 필요
- ⇒ (검토결과) 비대면 실명확인의 특성상 대면확인 방식에 비해 사고위험이 높고, 대리인에 대한 위임여부 확인 서류의 실시간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 감안시 수용 곤란

## □ 자율조정의 의무화 및 민원 부담금 도입

- (권고사항) 금감원에 제기되는 민원접수 건수가 증가\*하고 있으므로, 금융민원 자율조정 전치주의(前置主義) 및 금융민원 관련 부담금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의 책임감 있는 민원처리 유도

\* 금융민원 : ('08년) 5.3만건 → ('17년) 7.6만건

- ⇒ (검토결과) 금융민원의 자율조정 전치주의는 금융당국에 의한 신속한 조정을 원하는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
  - 현재도 이미 자산규모에 비례하여 감독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민원 부담금을 추가 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

## □ 휴면재산 환급을 위한 최신주소 공유제도 개선

- (권고사항) 금융소비자가 이사 등으로 전입 신고시, 당사자 동의를 받아 변경된 최신 주소를 신정원을 통해 금융회사에 제공
- ⇒ (검토결과) 주소 변경과 같은 소비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는,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신정원보다 민간영역에서 수행함이 바람직
  - 현재 민간기업이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중이며, 신정원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민간영역을 부당하게 구축(驅逐)할 우려

## 2. 금융회사 고충민원 및 규제개선 관련

### □ 부동산리스 취급제한 규제 완화

- (권고사항) 부동산리스 취급제한 규제\* 완화로 부동산리스 수요 흡수 및 리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

\* 시설대여 잔액이 총자산의 30%이상인 회사만 부동산리스 업무 가능

- ⇒ (검토결과) 여전사 건전성, 부동산 시설대여에 대한 실제 시장 수요, 동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 발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완화여부를 검토할 예정임

※ ombudsman 회의시('18.6월) 불수용하기로 하였으나, 규제완화 필요성 재검토 예정

### □ 증권회사의 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 발행 허용

- (권고사항) 증권사에 소액신용 기능이 포함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발행을 허용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

\* 저축은행, 신탁 등의 타업권은 발급하고 있어, 업권간의 형평성 고려 필요

- ⇒ (검토결과) 직불전자지급수단인 증권사 체크카드는 「여전법」상 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이 어렵고,

- 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 허용시, 증권사는 우회적으로 고객에 대한 일반 대출을 취급하게 되므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

## Ⅲ. 향후 계획

- '19.1월 중 '18년 ombudsman 활동결과를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 후, 보도자료 배포 및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해 공개

※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(제18조⑦)에 따라 매년 ombudsman 활동결과를 다음 해 3월말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 후 대외공개 의무화

## 1. 옴부즈만 구성 및 임기

□ (구성)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금융당국·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 추천을 통해 7명 이내(현 5인) 위촉

\* [2기 옴부즈만 명단] : ①장용성(위원장)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, ②서정호 금융연 선임연구위원, ③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, ④김은경 한국외대 교수, ⑤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

□ (임기) 임기는 2년, 1회에 한해 연임 허용

\* 법적·신체적 장애, 비밀엄수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분보장

□ (겸직금지) 정치활동 겸직, 이해관계 직무활동 등이 제한됨

## 2. 옴부즈만 직무범위

□ (금융규제 점검)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준수 여부 및 옴부즈만 개선권고 등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 등

□ (고충민원 및 소비자보호) 불합리한 금융규제로 인한 금융회사 등의 고충민원 및 민원·소비자보호제도 관련 개선 권고 등

## 3.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

□ (신청) 신청인은 고충민원 신청서를 금융규제민원포털, 금융협회, 금융현장소통반 등을 통해 제출

\* 신청인 인적사항 등 누설, 신청 방해, 신청철회 강요, 신청인 불이익 등 금지

\*\* 금감원·유관기관의 소관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처리 후 보고

□ (처리절차) 관련 자료 제출·열람,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옴부즈만 회의에 회부

## 참고 2

## 제2기 금융위 음부즈만 명단

	성 명	현 직 위	학 력	주요경력
위원장	 장용성(1953)	금융투자자 보호재단 이사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남대 행정학 학사</li> <li>▶ 美오클라호마대학 행정학 석사</li> <li>▶ 한성대 경영학 박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한양대 경영대 특훈교수</li> <li>▶ 금융개혁회의 위원</li> <li>▶ 매일경제 대표이사 부사장</li> <li>▶ MBN 대표이사 부사장</li> </ul>
은행	 서정호(1964)	금융연구원 연구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연세대 경영학과</li> <li>▶ 미 텍사스공과대 경영학 석사/박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금융연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</li> <li>▶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</li> <li>▶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</li> <li>▶ 하나금융지주 부사장</li> </ul>
금 투	 최승재(1971)	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원 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서울대 독어/법학 학사</li> <li>▶ 서울대 법학 석사/박사</li> <li>▶ 美콜럼비아 로스쿨(LLM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</li> <li>▶ 권익위 해석 자문단 위원</li> <li>▶ 한양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</li> <li>▶ 김앤장 법률사무소</li> </ul>
보 험	 김은경(1965)	한국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 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학/석사</li> <li>▶ 독일 만하임대 법학 박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</li> <li>▶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</li> <li>▶ 한국보험법학회 이사</li> </ul>
소비자 · 중 소	 조성목(1961)	서민금융 연구원 원 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경기대 경제학 학사</li> <li>▶ 연세대 경제학 석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</li> <li>▶ 한국은행 조사부, 금융결제부</li> <li>▶ SK루브리컨츠 고문</li> </ul>

\* 2기 음부즈만: '18.3월에 위촉되었으며 임기는 2년